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. 29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7. 1. 30
- 다. 상 정 일 자 : 2007. 2. 7 (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2(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) 및 제30조의3(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)이 신설(2005.5.31)되어 지하수의 적극적인 보전관리 및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사용자에게 소정의 원수대금을 부과·징수하고
- 「지하수법」 제4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 등)의 개정(2005.5.31)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함에 따라 세부절차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(안 제2절)
  - ▷ 지하수관리계획 수립, 지하수 영향조사, 지하수 오염평가보고 등
  - ▷ 위원장포함 11인 이내, 위원장은 도시국장, 임기 2년
-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(안 제3절)
-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·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·징수(안 제4절)
  - ▷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「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함
  - ※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
    - '07년 : 150원/톤, '08년 이후 : 160원/톤
- 「지하수법」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 규정(안 제5절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2·제30조의3·제40조 등
- 예산관련 : 사하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
- 합 의 : 기획감사실, 세무과, 재무과 협의완료(2006.11.8)
- 입법예고 : 2006. 11. 10 ~ 11. 30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#### □ 본 조례 제정 건은

-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지하수개발·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유지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보건위생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2005. 5. 31부로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원조성관리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한다고 생각되며
- 또한 중구와 영도구 등 6개 구에서는 기히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구, 해운대구 등 8개 구에서도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상정 중에 있으며 강서구, 기장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
- 특히 지하수 관련 법령에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#### □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